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4. 24.(수) 14: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1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18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 (2019-19-091)**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객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객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2건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2월에 위원회에 보고드렸고, 2월 19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여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하였습니다. 의견 접수 내역은 <붙임 4>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하위고시 2건은 규제 비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에서 KT 화재 건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만 규제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해서 동 사항은 별도로 재입법예고 예정입니다. 다음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분쟁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접수된 의견을 <붙임 4>를 참고해 보시면 우선 분쟁조정 절차 중에서 조정 불성립과 관련된 규정 필요성을 제기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대표자 선정 제도가 집단분쟁 조정제도로 운영될 것을 우려해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에 분쟁조정 신청 시 의견진술, 통보 등 여러 가지 절차상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정 제도 관련 인용 조항 수정사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재정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과 관련된 인용 문구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 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법률로 상향하여 시행령상 원래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새롭게 추가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한 내용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범죄특례법을 위반했을 시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행령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액을 설정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인데 별정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정비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도 동일하게 사업자와 이용자 간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비필수앱 삭제 관련 금지행위 추가에 따라 과징금 적용기준을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였고, 행정예고 후 수정사항 부분을 보시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과징금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용조항을 삭제하고 재검토 기한도 재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상정은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통신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규정 신설, 그리고 비필수앱 삭제에 관련된 금지행위 규제, 또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 등 사안이 모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와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입법예고나 관계부처 의견조회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통신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집단소송제도와 다수의 분쟁 당사자의 공동신청 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과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보고서 언급한 사업자단체의 이의 제기내용은 무엇입니까?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붙임 4>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주장한 부분이 저희가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 규정을 보시면 여러 명의 소비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봤을 시에는 다수가 분쟁을 신청했을 때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스스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약 대표를 선정하지 않았을 시에는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집단으로 분쟁을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많은 집단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우려사항이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까?

○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여러 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대표자를 누군가는 선정해야 통지를 한다거나 의견진술을 한다거나 자료 제출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한 것입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통신분쟁 조정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6. 보고사항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기준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에서 설정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 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최저금액을 상한액의 30%로 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현행안은 1회 위반 10%, 2회 위반 30%, 3회 위반 60%, 4회 이상일 때 상한액의 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회 위반 시 30%, 2회 위반 60%, 3회 이상 위반 시 100%를 부과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일정(안)입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일괄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송부하고 나면 이후 입법예고 등 개정 과정은 법제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과태료 금액 규정에 대해 유형별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법제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과태료 상한액 대비 1차 부과금액이 10%인 현행 기준을 30%로 상향하는 안건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사업자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태료 규정 전반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이 과정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의결주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일반적으로 과태료 상한액 50% 이상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치겠다는 것은 개정안이 30%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법제처 기준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면 '주체, 기간, 경중 등에 따른 차등, 정책적 고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통점의 경우에 소규모 유통점이 해당되어서 주체의 성격을 고려해서 30%로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였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유통점이 굉장히 영세하다는 것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지요?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처음에 낮게 한 것도 유통점의 영세한 사유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도

최소 기준을 30%로 하고 어느 정도 법제처에서도 인정한 것이고, 또 과기정통부에 유사한 과태료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맞춘 사항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해하였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위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방송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배경입니다. 방송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개정이유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서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지원의 범위를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나> 개정내용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 규정인 제54조제4항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은 아래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제1항제6호에 따른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EBS 송신지원의 범위를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기술상 매우 단순한 개정안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공영방송 KBS와 EBS의 자체 합의가 안되고 갈등이 지속되고 결국 방통위의 중재노력도 성과를 얻지 못하여서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KBS에 UHD 방송을 허가하면서 EBS와 UHD 송신지원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KBS가 합의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제3기 때는 최성준 위원장께서 나서서 중재하였지만 합의 도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기 위원회에서 두 차례 중재노력을 하였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물론 감사원에서도 계속적인

지적을 해서 결국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이 안 된 핵심원인은 공영방송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져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 분배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KBS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과 함께 EBS 역시 UHD 도입을 위한 기술계획서조차 자력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EBS의 경영진과 기술진의 안이한 자세 역시 문제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법 개정 이전이라도 양사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KBS와 EBS 간에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조문화되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욱 위원님 지적대로 KBS와 EBS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보면 도저히 기대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는 양 방송사 간 합의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어떻게 진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송신지원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선 법부터 개정하니까 이것은 위임해 주고, 방송법 개정이 되면 시행령 개정애 앞서서 다시 한 번 KBS와 EBS 간 송신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사무처에서도 잘 주선해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및 과태료 신설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방송법」은 SO 등 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SO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는 자료 제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법 수준으로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IPTV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송법과 동일하게 IPTV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현황 등 일반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조사 및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자료제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입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방송법에는 SO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관련해서 조사를 우리가 할 때 자료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하지 않으면 또 처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IPTV사업법에는 당초 이런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까? 배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처 예측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11년이 지난 사항인데 당초부터 입법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금은 아시다시피 SO를 증가하는 가입자 수로 빠르게 IPTV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PTV가 이제는 공적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을 지배하고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법적인 미비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빨리 개정해서 그런 조항들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혹시 이것은 이른바 IPTV법인데 이것을 관장하던 것이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다가 또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서 관련 부처가 과기정통부로 바뀌면서 이 입법 미비 상황이 좀 더 길게 간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미래부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사후규제 금지행위 관련 규정은 물론 저희 방통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통위가 여러 가지로 이런 입법 미비사항을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당연히 뒤늦었지만 손을 보고 다른 사항도 이런 입법 미비사항이 있는지를 방통위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사후규제는 대부분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사후규제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강화할 것은 하고, 또 사전규제가 완화되는 데 따른 오히려 보완장치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그동안 IPTV사업자의 사후규제를 위한 필요한 자료 요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해 왔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IPTV의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금지행위 위반이 증가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협조가 어려울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법 수준으로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이번 법 개정은 앞으로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시장규제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견 없이 원안대로 접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방송법으로 포괄해도 되는 것이나 케이블TV와 똑같은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늦게까지 형평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이것이 양쪽에서 양쪽 기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소위 IPTV를 사전규제·사후규제 이런 식으로, 또 유료방송·비유료방송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규제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빨리빨리 시정이 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5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57분 폐회 】